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 경 만**

Q 현장소장이 작업을 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업무도 했다면 사업주로서의 책임 이 있는지 여부

A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공사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어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선발 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지급 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는데 위 회사로부터 임금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돈을 현장소장이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각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현장소장이 비록 위 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Q 정리절차에 있는 회사의 관리인은 사용자이므로 합의 없이 퇴직금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A 관리인은 정리절차를 밟고 있던 대한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할 것이고, 회사 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 속하는 퇴직금은 우선권이 있으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과 같은 신고, 조사, 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수시 변제하는 것이므로 관리인은 이 사건 퇴직금의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면 그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라도 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채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일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니 관리인의 이 사건 소위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한 조치는 정당함.

☞한솔노무사사무소(031-877-7582-3)

법·률·상·담

변호사 **김 제 동**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Q 저는 甲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주차장 부지로 수용된다고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이미 법원에 공탁되었고 甲의 다른 채권자가 공탁된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자인 제가 토지수용보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370조 및 제342조에서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69조에서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불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음에 있어, 그 권리실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즉 특정성이 유지 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였고, 또한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금이 출급되어 수용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까지는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상금의 변제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며(1992.7.10.92마380,381), 민사소송법 제733조, 제580조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방법의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은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만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1994. 11. 22. 94다25728)

그러므로 귀하는 저당권의 변형물인 보상금이 특정성을 유지하는 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고,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금이 출급되어 수용대상 부동산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까지는 토지 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채무명의 없이 담보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甲의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귀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귀하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 문 환**

▶성폭력을 당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긍정적인 사고와 쾌활하고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몸과 마음의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도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은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권의 침해를 당한 것이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것이며,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하며 친구나 가족 중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각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를 전화를 걸어서 필요한 도움이나 정보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당시의 고소할 생각이 없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의학적인 증거들과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도 씻지 말고 이도 닦지 말고 되도록 화장실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샤워나 목욕, 특히 질 세척 등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얼룩이나 기타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에도 몸을 씻거나 갈아입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으며 48시간 이내에 진찰을 받아야만 질 내에서 정자를 검출 할 수 있습니다. 질파열, 처녀막 손상, 임신, 성병 등의 적절한 처치를 받고 증거보존에 필요한 증거물들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에 신고 및 고소를 통한 법의 문제해결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며, 성폭력 피해신고는 마지막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증거의 보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시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후 피해의 정도나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불안이나 무력감, 우울, 분노 등 심리적인 후유증에서부터 위장장애와 같은 신체적 후유증이나 퇴사나 휴학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후유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빨리 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잊는 것은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덮어둠으로써 더 키울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상담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타(031-542-3171)

전·기·상·식

한전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장 **신 재 우**

Q 전선과 건물과는 몇m 이상 띄어야 합니까?

A 건물과 가공전선과의 이격 거리는 아래 거리 이상을 이격시켜 시설하여야 합니다.(절연전선인 경우)

선로구분/방향	상방	측방	하방
22.9kv-y 특고압선로	2.5m	1.0m	1.0m
저압선로	2.0m	1.2m	1.2m

Q 전력선은 지상에서 어느 정도의 높이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합니까?

A 전력선은 시설장소 및 시설상태에 따라 아래 높이 이상으로 시설하여 교통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저압, 고압

시설장소	시설상태	높이
도 로	지표상	6m이상
철도,궤도	궤도면상	6.5m이상
횡단보도교 저압선 나선	노면상	3.5m이상
저압선 절연전선, 케이블	노면상	3m이상
고압선 나선	노면상	4m이상
고압선 절연전선, 케이블	노면상	3.5m이상
	지표상	5m이상
기타의 장소 저압선으로서 도로 이외의 지표상		4m이상

2. 특별고압

사용전압의 구분 지표상의 높이

3만3천볼트 이하 5미터(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미터,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미터,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로 서 전선이 특별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4미터)

3만5천볼트를 넘고 6미터(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미터, 산지 등에서 사 16만 볼트 이하 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미터)

16만볼트를 넘는 것 6미터(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미터, 산지 등에서 사람 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미터)에 16만볼트 를 넘는 경우 1만 볼트 또는 그 단수마다 12센티미터를 가한 값.

☞문의 :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 (031-539-0257)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안과과장 **하 효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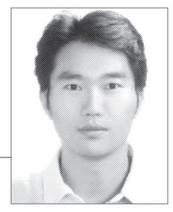

▲눈주위의 노화 현상과 하안검 성형술

요즘은 누구나 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눈은 사람의 외모나 풍기는 인상을 크게 반영함에 따라 여성 뿐만이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눈을 아름답게 하여 외모나 인상을 고치고 싶어하지요. 처져 보여서 불편한 눈, 크기가 달라 보여 예쁘지 않는 눈, 눈이 작아 인상이 좋아 보이지 않는 눈 등 정상적이지만 모양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많고.....

또한 현대 사회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몸의 피곤함 때문에 눈 주위의 노화현상에 민감하신 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눈 주위의 노화 현상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눈가주름이나 하측 눈꺼풀의 지방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등의 현상을 경험하면서 인지하시는 편인데요.... 잔주름의 경우는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보톡스 주사 등을 정기적으로 주사하여 대응하게 되지만 한계를 넘은 노화현상은 수술적 요법을 통해 회복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쌍꺼풀수술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그렇지만 쌍꺼풀 수술만이 안검수술의 전부는 아닙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특히 아래 눈 부위의 지방이 두툼해 보여서 늙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는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것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볼록 튀어나온 눈 밑의 지방덩어리 때문에 답답한 인상을 주게 된다면….

하안검에는 크게 세 부분의 지방 주머니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안검부위의 지방이 눈 밑의 근막에 고이게 되고 피부탄력이 소실됨에 따라 중력 방향으로 처지면서 심하게 불룩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 빠르면 20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이 현상으로 인해 안검이 늘어지게 되면서 주름이 지고 늙어 보이며 피곤해 보이고 짜증스럽게 보여 타인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 줄 수도 있습니다. 심술단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요.

이 경우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 수술적 치료법입니다.

물론 수술 전에 하안검의 주름, 피부의 이완상태 및 안와지방의 삐쳐나온 상황을 체크하고 눈꼬리가 쳐진 형태를 파악하여 도안을 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며 환자에게 어느 곳이 가장 신경쓰이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시는 분도 가장 교정하고 싶은 점이 어떤 점인지를 정확히 피력해 주시는 것이 좀더 나은 수술결과를 위해 필요합니다.

수술방침으로는 피부 이완의 정도에 따라 1) 피부만 절제하는 경우 2) 안와지방만 절제하는 경우 3) 눈물레근 처리와 피부절제 4) 안와지방제거, 눈물레근 처리와 피부절제를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수술법으로는 눈 안쪽 결막부위를 절개도나 레이저로 절개하여 지방을 빼주고 눈꺼풀 아래쪽의 피부부위는 필요한 만큼만 절개하여 처지고 남게 되는 여분의 피부를 잘라주어 젊어지는 인상을 만들어 주는 수술법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피부를 절개하면 흉터가 남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 절개부위는 하측 쌍꺼풀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흉터가 눈에 띄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젊은 성인들의 경우 피부절개 없이 결막만을 절개하여 눈밑 지방을 빼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는 아예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회복기간은 약 일주일 후 실밥을 뽑은 이후엔 모든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며 불룩한 지방과 늙어 보이는 인상 때문에 고민하는 남녀 모든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수술이며 이러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술의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246)

세·무·상·담

세무사 **박 운 종**

[1주택과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 시 비과세 요건]

Q 2003년부터 거주하던 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던 중, 2006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전부터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A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6년1월1일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 포함)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과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사를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 재개발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종(031-872-6116)

병원 세탁물 전문

최첨단 기계도입 · 양질의 세탁문화를 열어가는 **완주섬유**

이제부터~ 세탁 걱정 끝!

최인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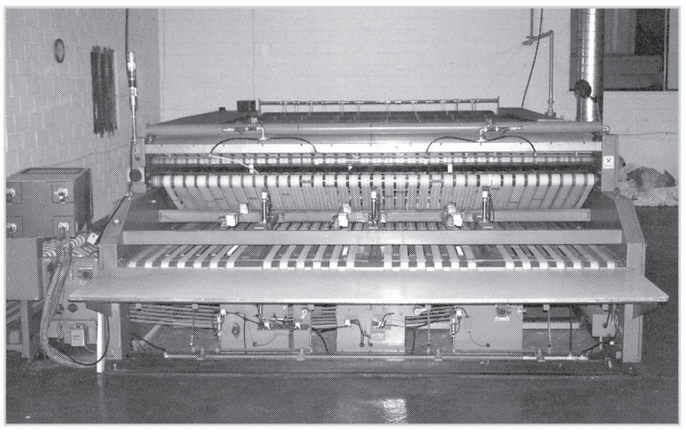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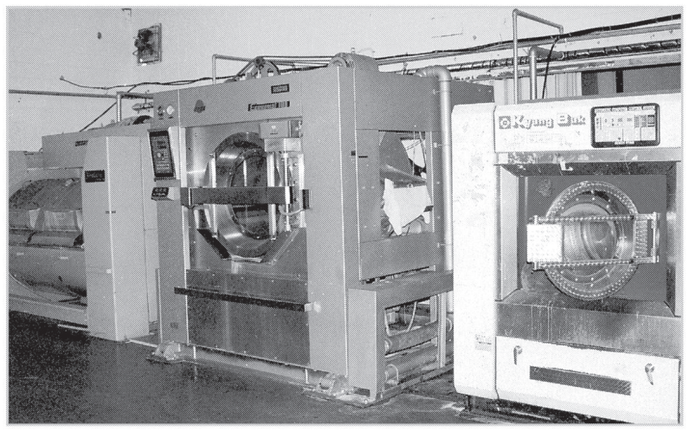

●풍부한 노하우

●저렴한 가격

●위생적인 세탁

☎ 031) 534-3041 Fax. 031)534-3042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373